

Maria Adele Carrai. 2019. *Sovereignty in China: A Genealogy of a Concept since 18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troduction

차 테 서

● Sovereignty and China: Past, Present, and Future

- 주권 추구 = 중국 근현대사의 핵심성격 규정
 - 아편 전쟁 이래의 지속된 특성
 - 오늘날 남동 중국해 분쟁, 대만통일, 소수민족 자치구 문제 등이 모두 최근에 만들어진 주권국가로서의 중국 재정의, 국제법 도입 등과 연관
- 주권 & 국제법 도입의 함의
 - 청나라의 변경(frontier)이 국경(border)으로 전환
 - 중국천자에 가상적인 보편, 최고 권위를 제공하던 유교에 기반한 정당성 레토릭이 동일하게 가상적인 평등 주권국이라는 또 다른 정당성 레토릭으로 대체
- 19세기 청조의 “주권”개념 동원이유
 - 반서구침탈 & 기성 청제국 팽창의 유산인 영토보존
- 다민족, 다규범 제국이었던 청의 유산이 근대중국을 계속 괴롭힘
 - 중국 공산당도 여전히 조국의 재통일 추구
 - 주권이 현대중국외교정책의 초석 구성

- 본서의 중심주제
 - 중국 주권론의 기원과 전개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궤적과의 관계
- 오늘날 탈주권론의 시대에 중국은 웨스팔리안 주권의 수호자처럼 행동
 - 하지만 주권개념은 국제법과 함께 19세기에야 중국사에 진입
 - 중국의 역사에도 타국과 조약체결을 통해 동등한 관계를 맺는 사례들이 존재하나 이는 주권 개념과 무관
- 주권은 웨스트팔리안 신화에 기초한 특정한 세계관/상상계
 - 대강 18세기에 들어 발전한 독트린으로 고유한 유럽사의 산물
 - 고유한 외교행위, 프로토콜로 표현
- 국제법의 지구사(global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비판
 - 중국사 내에서 국제법/주권의 유사개념을 찾는 것은 물역사적 접근

- 국제법의 지구사 접근이 유럽중심주의에 빠질 위험성
- (서구)국제법과 타 규범질서간의 조우를 비서구의 경험이 서구의 진보, 문명사에 통합되는 필연적 과정으로 이해할 우려
- 본서의 입장
 - 주권과 국제법을 특정한 역사, 계보 속에 맥락 지우기: 역사의 보편적 목표X
- 서구적 맥락에서 주권 개념
 - 서구 법, 정치 전통에서 핵심적 관념
 - 국제법 체제의 주체를 정의: 행위자들이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개념 프레임 제공
 - 서구에서 주권은 본래 신의 속성: 16세기 보댕 이래 개념의 점진적인 세속화, 세계관/상상계로서 국제법이 부상
 - 주권 & 1648의 신화적 기원: 강력한 수사적 도구로 이해. 주권 부상은 근대 국제법 부상과 병진
- 18~19세기 서구의 팽창으로 주권/국제법이 보편적 지위 획득
 - 주권/국제법의 신화가 근대 국제법-정치질서 구성
 - 문명표준론: 주권은 세계를 서구열강의 지배하에 놓는 범주로 활용.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
 - 주권평등의 수사와 달리 “문명화 사명”의 미명 아래 약소국, 비서구 국가의 주권 무시
- 언어와 실제 행태간 격차존재
 - 주권 개념 자체의 경합적 성질 때문: 주권의 개념과 현실 간의 관계는 조건적, 불안정
 - 주권개념은 수사적 도구로 기능: 상이한 가치들이 투사, 매우 다양한 입장들을 정당화 가능
- 주권/국제법의 보편적 지위획득은 인류 역사 속에서 특이한 사태
 - 지난 수천 년간 만국공통어로서 국제법과 같은 언어는 부재
 - 상이한 질서들/세계관들이 조우, 충돌해온 역사
- 19세기 주권/국제법 도입 이전까지의 중국
 - 자신만의 보편성, 위계적 우주론, 문명화 사명을 지닌 다종족/다규범 제국
- 아편전쟁 이후 세계의 새로운 재현으로서 국제법 프레임 사용 시작
- 청에서 주권 개념의 번역은 상이한 정의, 권리, 법/세계질서의 비전 수용 의미
- 주권 담론의 도입은 중국에서 근대성 담론의 중핵구성
- 중국 학자들의 분투
 - 제국 구원의 도구로서 국제법의 중요성 인식
 - 전통체제와 서구 주권질서의 통약가능성 창조 시도
 - 중국의 새로운 국제정체성을 형성을 도울 신 담론들을 발명
- 중국의 주권도입사에 대한 기성 연구들은 중국의 수동성 전제

- 중국의 agency 강조 필요: 주권개념 구성의 혼종적 성격
- 본서의 목표
 - 국제법 도입기~현재에 이르는 중국의 주권담론/용법의 첫 체계적 검토
 - 법률 오리엔탈리즘, 국제법사의 유럽중심적 해석 비판
- 중국도 국제규범과 개념의 정당한 조형자이자 위반자로 서술
 - 주권담론을 통해 중국의 새로운 국제정체성이 부상, 형성하는 역사 서술
 - 중국에서 주권개념의 계보추적: 과거의 다양한 이해방식들 경합 → 현재의 이해방식
- > 미래의 궤적 일별
- 서구 규범질서의 지구화 과정을 맥락화 하기
 - 유럽중심적 국제법사의 외연확장 기여
 - 현 지구법 질서를 함께 조형한 비서구의 경험에 대한 설명제공
 - 주권에 대한 목적론적, 선형론적 이해 탈피
- 근대 중국사 = 중국 자신의 제국/식민사 & 서구 식민사의 혼종

● The Method of Conceptual History

- 주권 개념은 역사전개에 의존적, 절대적/초역사적 의미 보유X
- 개념사의 방법론 채택: 코젤렉 & 캠브리지 학파
 - 문화/정치, 사상/행위, 언어/행동의 근본적 통일성, 변증법적 프로세스
 - 개념은 언제나 사회, 정치적으로 내장 & 행위자들은 특정한 의미지평 속에 스스로를 인식하는 세계관으로 무장
- 1870-80년대 중국에 주권/국제법 개념의 도입, 토착화
 - 새로운 의미지평 구성
 - 중국의 지식인들이 중국의 주권 정체성을 새롭게 승인
- 자료의 취사선택문제: 엘리트, 국가담론에 국한
- 경합되는 개념으로서 주권
 - 경쟁하는 담론들간 투쟁 속에서 주권개념의 사용추적

● Outline and Contribution

- 본연구의 핵심 기여지점: 중국에서 주권담론의 “계보학”
 - ① 보편가치 이데올로기의 재고
 - 주권 개념을 역사적 맥락에서 탐구: 다양한 이해방식들의 존재 발굴
 - 비판적 역사관: 목적론적 역사관, 진보의 메타서사와 결별
 - ② 현대 국제법의 지배적 자유주의 패러다임 재고
 - 서구와 중국의 충돌: 주권이 권위/정당성 레토릭의 한가지 가능성에 불과하던 사실 발견
 - 현 국제법의 보편성 주장의 맥락화, 상대화 추구
- 중국 = 현재와 과거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고

Chapter 1

International Law and the Sinocentric Ritual System: A Nineteenth-Century Clash of Normative Orders

김 봉 진
{}는 사건 삽입

머리말(Introduction)

중국 전통의 지역 질서: 유교적 위계 질서 {토착적/고유한 전통적 주권 관념 존재?}
서양 근대 국제 질서: 베스트팔렌 주권(sovereignty) 질서
주권 개념의 독점 → 지구화, {이종교배(hybridization)}와 변질
주권 개념을 둘러싼 의미 균열
포스트 주권과 주권의 대립/갈등
제1장은 19세기~20세기 초의 중국: 주권 개념의 수용과 충돌,
그 역사적 전개

제1장 국제법과 중화의 예적 체제: 19세기 규범 질서들의 충돌

1. 국제법 역사 속의 중국 이야기

근대화 지표/목표: '보편 제국에서 주권 국가로' '천하에서 국가로'

문명 국가: 주권 국민(민족) 국가

'법적 오리엔탈리즘' (Ruskola), 법 문명의 클럽

중국은 무생물의 객체: 주권 개념, 국제법이 결여된 나라 (Hegelian philosophy)

법, 역사, 주권의 외부자 '보편사에 참가할 권리 없다.'

개체성과 자유를 억압해 온 전제(despotism), 정체성

← T. Duara: 이항대립 도식 비판

汪暉: '토착적/고유한 주권의 언설'

→ 저자의 입장: '윤리적 오리엔탈리즘'(Ruskola)에 입각하여 '중국이 자신의 주권 언설을 통해 새로운 국제적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밝히겠다. {hybridization}

① 과거 중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주권 아이덴티티가 출현했는가.

② 미래 중국은 현존하는 절대적 주권을 어떤 다른 궤적으로 벗어날 것인가.

가상의 충돌: 주권, 그리고 국제법의 보편화

서양 국제법, 주권 개념과 관행 v. 중국 규범 질서의 상정(assumptions)과 중층적 관행

- 서양중심주의 극복 시점에 의하면 '중국 고대에도 주권 국가가 존재했다.'

W. A. P. Martin: 주대(周代) 초기적 국제법

T, Brook et al.: 중국/서양 전통의 공약가능성(commensurability) 복수 복합 '국제법' 존재

그러나 '서양의 범주를 묻지 않고 대비하는' 일종의 오리엔탈리즘

→저자의 시각: 근대 국제법은 서양 역사, 식민주의, 기독교와 연관되어 탄생한 것임에 도 이를 '보편적 실증 과학'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서양의 독점=서양중심적 근대주의}

J. Bentham; 1789년 '국제법'을 조어, 'law of nations, *jus gentium*(만민법)' 대체하여 '보편화'

그 '보편성'은 식민주의, 제국주의 팽창을 수반. 비서양 세계 적용 대상 제외. {비/반문명} 국제법은 '다른 정치체, 전통과의 만남'으로 발전한 결과이거늘 그 발전은 늘 유럽중심: 지금껏 '주권은 문명의 기준이요, 국제법은 국제 사회에게 적절한, 자연스런, 보편적인 규칙의 집합이다'라고 여기고 있다.

= 서양 나라들은 청 왕조 '중국중심 위계적 세계 질서'는 '국제 규범 위반'이라 여겼다. 예컨대 조공 체제(tributary system)를 기이하게 보았다. 하지만 서양 불평등 조약 체제의 '타자성'은 타국의 '주권 정지'였고, 그 근본에는 유럽 지방, 지역의 강국 정치.

= 중국은 '언제 국제 사회의 주권 멤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가 승인

Immanuel Hsu, 1880년대 말부터

Gerrit Gong, 1943년 불평등 조약 폐기되었을 때

→저자의 관심: 중국 지식인, 외교관이 자국 주권을 정당화하기(legitimize) 위해 서양 관념(notion)을 어떻게 탈용(appropriated)했는가.

중국 규범 질서의 특색들에 대한 평가: '중국, 대청(大清), 대청인, 화인(華人), 중화'

Lydia Liu =중국; 주대(周代)의 지리적 중심, 중화 사상

중국은 위계적으로 조직된 다종족, 다규범 정치체

아편 전쟁에 이르기까지 서양 나라들 바보취급(scoff) {호시(互市) 체제, 건륭제}

전쟁 후 역전 현상; 기술, 군사, 국제법 도입 시작. 1895년 청·일 전쟁 이후...

규범 전통의 충돌; 서양은 평등 주권이라는 세속적 수사로서 중국=천자국 위계 부정

중국 전통적 법(국제법)의 셋 이상, 여러 모델: '주권 언설, 타자' '중국/유교적 모델'

중국 {郡縣}; 몽고, 티벳, 위그르 {藩屬 <理藩院>}

조공국 {藩國, 外國 <禮部>} + {호시국, <地方官>}

'상호연관의 우주론적 천하 체제'

단, 중국 제도/관행과 (서양) 주권 평등의 마찰이 곧 '양립 불가'를 뜻하지는 않음.

Ex) 조공국을 '평등 지위(equal footing)'로 취급

주권이 신조어이긴 하나 전통 속에 '주권, 독립, 평등, 세력 균형' 등 개념 부재 아님.

논쟁, 반론: 閻學通: 중국의 '문화, 도덕' 요소가 '자치, 평등'보다 중요

王立華: 도덕 부재의 주권 국가 v. '천인합일'의 정치 철학

A.I. Johnston: 서양 현실정치, 개별 주권 국가; 중국=청국과 별 차이 없다.

청 제국, 몽고, 티벳, 만주, 新疆, 투르키스탄

저자: 도덕을 강조하지만 실은 '제국과 주권의 상호 침투' '주권과 제국의 경계 애매'

2. 중국의 규범 질서: 천인합일과 상호연관의 우주론

질서 관념: 어떤 정치, 법 체제에서든 근본적인 것.

서양은 '무정부(anarchy)' {equality} v. 중국은 우주론적, 예적 질서 {hierarchy}

중국의 위계 질서의 기초는 유교적 질서 + 형이상학적 우주론

Angela Zito: 천, 음양과 청 제국 주권과의 깊은 관계

Julia Ching: 천인합일, 도교/유교/불교

江永林: 대명률과 천리(天理), 삼강오상(三綱五常)

王愛和: 오행, 사방에 기초한 도덕화된 상호연관적 우주론

『尙書』 禹貢편; 畿內 + 甸, 荒, 要, 綏, 侯의 오복(五服)

『山海經』; 중국 + 四海

청대의 개명 관료 馮桂芬(1809~1874)의 중화 의식 =지도; '天下全圖'

중화: 中 = 和 = 天子 = 天命, 天譴 {→天理}, 革命 = 祭天, 天地人 三才

제천 의식; 하늘(천)의 질서 제례, 내지와 외지, 번속국, 조공국도 참가. 化外

雍正帝: '華夷一也, 中外一家' }

내외의 인적/인간 관계를 '주권'보다 중시

천자: 천지의 중개자 →林則徐의 서한; 아편 밀수 금지의 이유

3. 신성한 제국 내의 규범적 정의와 조공 체제

조공 체제 Fairbank: 중국의 우위성, 來華, 불평등 위계 체제

중국 판도; 18省, 藩屬國, 朝貢國

조공 체제 안의 다양한 관계

조약 체제(=국제법, 주권)는 그 예외적 레파토리로서 포용 가능

'조공 체제'란 서양의 발명 (Fairbank의 조어), 따라서 오해/오류도 있음.

중국의 우위성은 절대적이 아니었다. 宋-遼 관계.

조공국은 조공 체제를 이용했다. (자국 용어로) '일본적 화이 질서'

(자국 이익을 위해) 중앙 아시아의 터키족

15세기 베트남은 조공을 거부, 평등성을 요구, 황제를 칭했다. 티벳 달라이 라마

→필자는 그래도 조공 체제의 유용성, 틀을 수용.

보다 큰 틀의 조공 체제: 규범 禮는 '나라' 체제와 '국제' 체제를 아우름.

예는 사회의 각 레벨부터 세계 질서까지 모두 적용.

일종의 만민법, 세속적이자 규범적/종교적인 법. 목표; 천리에 따른 사회/우주의 조화.

『周禮』 『禮記』: 천지만물, 천지인 삼재의 禮

그렇다 해서 힘/폭력 사용이나 식민지화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청의 팽창주의; 禮部, 그리고 정복지 통치 기관 理藩院

4. 결론

19세기 초엽 대치된 두 질서

우주론적 위계 질서 v. 주권 평등 논리, 식민주의를 통한 보편주의적 세계관

상호 갈등의 발생; 1793년 동인도 회사 후원의 G. Macartney 사절단 叩頭 거부v.

건륭제 '地大物博' 통상 거부, 자그마한 조공국 사절단으로 여김.

→이로부터 서양 나라들 사이에 중국을 '반문명'으로 여기는 풍조가 퍼져 나감.

영국은 '국제법, 주권'을 내걸고 중국을 강제로 편입할 계획. {자기 모순}

무역 개방 요구와 식민주의. 포함 외교와 아편 전쟁 →중국은 반주권 국가로 전략.

{모방과 반발} 중국 지식인, 관료의 국제법 수용 (제2장 이후)

Chapter 2

Secularizing a Sacred Empire:

Early Translations and Uses of International Law

김 종 학

Translating Emmerich de Vattel through a Secularized Geography: 1830s–1860s

- 〈만국공법〉이 번역되기 전 서양 국제법 및 ‘sovereignty’라는 용어의 조직적 도입을 시도한 것은 1839년 임칙서(林則徐)에 의해서였음.
 - ▶ 임칙서는 황실 번역가(imperial interpreter) 袁德輝에게 바텔의 〈만민법(Le droit des gens)〉 중 아편 금수와 관련된 부분의 번역을 의뢰. 그는 미국 선교사 Peter Parker의 도움을 받아 〈各國律例〉를 1847년에 간행함.(魏源, 〈海國圖志〉 66권 판본에 수록)¹⁾
 - ▶ “sovereign rights”는 ‘權’, ‘利’, ‘道理’ 등으로 번역됨.
 - ▶ ‘rights’를 ‘利’로 번역하면서, 임칙서는 “중국의 富는 오랑캐들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오랑캐들의 거대한 이윤은 모두 중국의 ‘정당한 몫(rightful share)’에서 빼앗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권리로 그들은 그 대가로 해로운 약물을 써서 중국 인민을 해치는 것인가?”라고 언급함.
 - ▶ 임칙서에게 중국의 풍부한 물산은 그 문명의 우월성의 구현(embodiment)이었으며, 비록 그의 글에서 중국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초보적 발상은 나타나지만, 이는 평등한 주권의 원칙과는 무관하며 중화질서의 유효성에 관해선 전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음.
- 〈해국도지〉나 〈영환지략〉에서도 중국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음. 徐繼畬의 경우, 유럽 문명을 존중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거의 중국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언젠가 중국문명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 문명도 본래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신념은 잃지 않는 등 중화주의(sinocentrism)는 여전히 유지되었음.

The Second Opium War and the Translation of W.A.P. Martin’s Wanguo Gongfa

- 텐진조약(1858)과 북경협약(1860)을 계기로, 불평등조약 체계와 포함외교가 정착됨. 이는 서구 열강에 의한 중국 주권의 잠식을 정당화하는 한편, 중국 조정에는 그 국경을 새로운 법적 언어로 재정의를 해야 하는 압력을 가함.
 - ▶ 조약에 의한 치외법권의 설정, 급격히 증대한 개항장 조계에 대한 외국의 행정적 통제, 중국 해역과 영토 내에서의 외국 군함과 군대 주둔, 연안 무역의 물품 수송과 내지 운항, 관세 자주권 제한 등
- 태평천국운동 이후 중국 지식인 사이에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중국의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1) 滑达尔各国律例, 1839.

- ▶ 1862년부터 풍계분, 공친왕, 중국번, 이홍장, 좌종당을 중심으로 동치중흥(the Tongzhi restoration) 시작(1865년 상하이 강남제조국 설치)
 - ▶ “中學爲體，西學爲用”，張之洞
 - ▶ 1861년 3월 ‘총리외국사무아문(總理外國事務衙門)’ 설치.
 - ▶ 1862년, 광저우와 상하이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인원을 선발, 서양 문헌의 연구와 번역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북경에 ‘동문관(同文館)’ 설치.
 - ▶ ‘double standard’(가와시마 신): 조공체제와 국제법 체계가 병존.
- 서양의 규범 체계를 전유하고, 중국의 고유한 ‘주권’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제2차 아편전쟁 직후부터 국제법이 조직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함.
- ▶ 1864년 William Martin에 의해 번역된 <만국공법>에서 처음으로 ‘sovereignty’를 ‘主權’으로 번역.
 - ▶ 서양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서양인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등 중국 법전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됨.
- ‘sovereignty’, 그리고 그와 관련된 ‘right’라는 관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중국에서는 자주적인 개인 또는 국가가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위(ultimate authority)를 갖는다는 관념을 이해시키기 쉽지 않다는 데 있었음. 중국의 관념에선 국가의 자주성(autonomy)에 대해 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물의 질서에 관한 우주론적 해석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
- ▶ 이에 따라 국가의 자주성은 ‘도덕화(moralized)’되고 전통을 통해 합리화됨.
 - ▶ 윌리엄 마틴은 의도적으로 국제법을 자연법(natural law)에 기초하여 도덕적 언어로 재현(moralized misrepresentation)함. 국가들의 야심이나 이기적 욕망에 대한 초국가적인 구속요인(supranational restraint)으로서 ‘자연법’에 초점을 맞춤.
 - ▶ <公法十一篇>(朱克敬, 1880) -> <洋務叢鈔>(1884), <皇朝經世文續編>(1888). 서양 국제법을 자생적 언어로 해석한 최초의 중국서적. 국제법을 유교의 윤리적 전통에 기초해서 도덕적으로 해석함. (“天命之性”)
- <공법편람>(1877)에 이르러 국력의 차이와 무관한 국가 간의 평등과 불간섭, 영사재판권을 제외하고 영토 내에서의 사법적 주권과 같은 근대 주권의 원칙이 완전히 정의됨.
- ▶ 1864년 프러시아 군함이 중국 항구 내에서 3척의 덴마크 상선을 나포한 것에 대한 공친왕의 항의에서 보듯이, 중국 정부는 <만국공법>을 서구열강과의 외교에 도구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The New “Sovereign Power” of China in the International Arena, 1870–1895

- 1870년대 말부터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국가들과의 대외관계 및 주권적 경계(sovereign borders) 내에서 식민지 영토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권 개념을 전유하기 시작함.
- ▶ 1877년 영국 및 독일에 부사(副使, associate ambassador)로 파견된 劉錫鴻의 경우, sovereign state(自主之國)을 ‘다른 국가로부터 내부 정책에 관해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로 정

의함.

- ▶ 영국,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대사 설복성은 ‘sovereignty’(主權)을 ‘independence’(自立) 또는 ‘autonomy’(自主)로 정의함.
- ▶ 왕도(王韜)의 경우 주권개념을 외부 열강에 의한 권리 침해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함. <除額外權利>(1882)는 치외법권을 처음으로 ‘額外權利’로 번역.

○ 주권 담론의 발전에 기여한 또 다른 단체는 개항장에서 관리로 근무한 상인들(唐廷樞, 徐潤, 鄭觀應, 盛宣懷)이었음.

- ▶ 정관응은 『易言』(1880)에서 중국이 서양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 것으로 계속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만국 중에 일국임을 인식하고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국제법은 그 내부 정치조직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다른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부여한다고 믿음.(‘論公法’)
- ▶ 정관응이 중국의 ‘주권’-특히 관세주권’을 옹호하고 그의 글들에서 국제법을 지지한 사실이, 반드시 그가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중국을 일개 주권국가로 관념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중국은 그 윤리적 우월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진정으로 왕도(王道)를 추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믿음. 그는 언젠가 세계의 모든 종교가 유교로 통합되고, 그에 따라 사해가 中土로 통일되는 때가 올 것으로 예견함.

Li Hongzhang and the Legacies of an Empire: the Tributaries and Border Security

○ 서구 열강은 변경지역이나 조공국에 대해 청이 실제로 통제나 지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지역에 대한 팽창을 정당화함. 즉, 상징적 의례나 명목적, 혹은 실질적 보호는 중국의 주권을 설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제기함.

- ▶ 이에 따라 중국은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국제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의례에 기반한 권위 대신에 전통적 판도를 새로운 주권적 경계로 재설정함.
- ▶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중국 조정은 국제법의 패러다임에 따라 그 국경을 재정의함.
- ▶ 정관응과 증기택 등은 중국과 그 조공국과의 관계를 변경 안보(border security)의 관점에서 재고하고, 관리의 파견과 내부문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 그 종주권(suzerainty)을 다시 확립할 것을 주장함.

○ 청의 조공국을 유지하는 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여러 조약을 주도적으로 협상한 이홍장의 경우, 權 (sovereignty)은 순수하게 물리적 능력에 관련되기보다는 도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 이홍장은 중국을 위해 대등한 주권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조공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주권(suzerainty)의 관념을 주장함.
- ▶ 서구열강에 대한 이홍장의 모방은, 중국이 그 국경을 확립하고 그 방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함. 이와 함께 그는 국제법과 보호국(protectorate) 및 종주권(suzerainty)의 관념을 그 조공국가에 대한 중국의 권위를 주장하는 데 활용함.
- ▶ 류큐의 귀속권을 놓고 일본과 벌어진 담판(1871, 1881)에서, 이홍장은 그것이 중국에 속하는

논거로서 ‘천하질서’를 언급하기 보다는 중국의 주권, 특히 변경의 안보와 국익을 주로 제시함. 이밖에 다른 글들에서도 이홍장의 주된 관심은 더 이상 조공체제나 천자의 보편적 통치의 유지가 아니라, 변경의 안보(sov^{er}ign border security)와 중국의 주권과 같은 세속적인 문제에 경도된 것을 알 수 있음.

- ▶ 1874년, 텐진조약의 체결로 베트남은 명목상 독립국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락함. 이홍장은 베트남의 독립을 반대했으나, 이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국의 보편적인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경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과였음. 1885년 이홍장-푸르니에 조약으로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전통적 조공관계를 폐기하고, 프랑스의 세력을 인정함. 이때가 되면 이홍장의 생각 속에선 조공체제는 이미 국제법적 체계로 대체되었음.
- 이홍장은 1879년부터 1894년 사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종주권을 확립하려고 시도함.
 - ▶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의 종주권 분쟁에서) He attempted to mobilize Western countries and in 1886 signed treati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Italy and Russia, all of which recognized Korea’s vassalage to China or its autonomy, *zizhu*.”(pp.79~80)
 - ▶ 종주권(suzerainty)은 국제법에서 모호한 위상(ambiguous status)을 갖지만, “Li-Ito Treaty의 체결 이후 몇 년 간 중국은 한국에서의 종주권이라는 공허한 허구에 매달렸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대외관계는 중국이 아닌 일본에 의해 관리(managed)되었으며, 중국 및 다른 조공국과의 관계는 동등한 주권국으로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됨. 그리고 빈사 상태에 이른 중국의 주권은 일본의 실효적인 보호관계로 대체되었음.

Conclusion

- 국제법의 초기 번역, 세계의 새로운 지리학적 표현, 그리고 서구 열강과의 접촉 증대는 중국으로 하여금 청일전쟁 전까지 국제법과 ‘주권’이라는 그 근본 관념을 전유(appropriation)하게 만드는 배경이 됨.
- 새로운 국제법 언어는 그 식민지와 조공국을 비롯한 청의 광대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도구적으로 instrumentally) 활용됨.
- 서구 열강의 주권에 관한 이해가 문명 표준의 관념에 근거한 반면, 중국인들은 주권을 문명의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민족에게 도덕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중국이 과연 주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는 처음부터 문제시되지 않음.
 - ▶ 그러나 변경 지역이나 그 주민, 그리고 중국이 종종 ‘종주권’을 주장한 조공국에는 이 권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중성을 보임.
- 청의 대부분의 관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변경지역이나 조공국으로부터 분출되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천자의 전통적인 상징적, 허구적(fictional) 권위를 새로운 법적 언어로 해석해야 했음. 청은 대부분의 제국 영토를, 허구적인 주권 속에서 성공적으로 보전하였음.

- 그러나 이 시기 대부분의 개혁적인 관료들은 여전히 청의 윤리적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음. 국제법과 주권 개념은 서양인들을 다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조만간 자연스러운 사물의 질서가 복구되리라고 믿었음.

Chapter 3

China's Struggle for Survival and the New Darwinist Concep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1895-1911)

손 병 권

〈China Is Cut Up Like a Melon〉

* 청일전쟁 이후 청중심의 조공체제의 붕괴 속에서 청은 주권, 국가간 평등, 국제법 등의 견지에서 중국의 약해진 위상을 자각함

* 각종 이권과 조차지 설정으로 외세가 득세하면서 개혁을 위해 변법자강운동이 일어났으나 실패하고 이어서 배외적인 의화단의 난도 진압됨

* 사실상 합병에 가까운 열강의 조차지 설정 및 세력권 확보 앞에 청은 매우 무력해짐

* 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러한 조차지의 설정과 영토의 할양은 청의 주권에 대한 근본적 침해였음

-> 비유럽 국가에 적용될 때 유럽 국제법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냄(청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서 이와 배치되는 조차지 설정)

* 중국의 지식인들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민족주의, 민족투쟁, 진화론 등에서 도생의 길을 찾으려 함

-> 사회적 다윈주의의 관점에서 본 국제법과 주권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국제적 생존투쟁에서 민족국가로서 중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도 함

* 그러나 동시에 국제법적 주권개념이 현실 국제정치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중국 지성계는 또한 고민에 빠지기도 함

* 왕도(王韜)-> 세상은 이익과 권력으로 움직인다 -> 이것이 청말 20년간 국제법과 주권에 대한 청 지식인들의 생각이었음

〈National Salvation: Sovereignty and China's Redemption〉

* 주권회복론이 중국 지성계의 대세를 이룸("extinction of sovereignty"(1905년 LüHaihu (1843-1927, 吕海寰)의 消滅之主权), or "alienated sovereignty"(裸(裸?)主权)의 문제 거론) -> 외세의 영향권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조차지에 대한 회수와 치외법권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0세기 초반에 등장함

-> 1895년부터 “right,” quan 权, quanli 权利, and zhuquan 主权 등의 개념의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함

* 외교의전도 서구식으로 바뀌고 중국의 지식인들은 국제법에도 관심을 지니면서 세계 국제법회의나 1,2차 헤이그 협약 등에 참석

-> 1911년 경이면 중국 지식인들은 주권개념을 숙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국제사회의 한 나라로 개별화하여 보게 되지만, 서방국가는 문명의 차이를 이유로 중국을 동등한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중국의 내적 개혁이 없이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문명화된 일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서방의 입장이었음

-> 서방은 평등한 주권국가로서 중국의 인정은 내부개혁을 조건으로 한다고 못 박음; 결국 불평등조약의 합리화로 나아감

-> 중국은 청말 신정운동 전개, 결국 실패

* 그래서民国 시절 주권의 이해와 활용을 특징짓는 목표는 불평등조약의 타파였음

* 일본 유학파를 통해 주권과 국제법의 개념이 많이 수용됨

〈Evolutionary Tian and the New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 자연의 도덕적 조화와 자연의 반복과 지속성을 강조하던 중국철학은 중국의 생존문제에 관한 사회적 다윈주의로 인해 자연의 선택과 진화(변화)를 받아들이는 몰도덕적인 방향으로 감

* 런던의 그리니치 해양대학에서 수학한 엄복 등이 종의 기원(物種原始)이나 기타 학슬리 등 사회적 다윈주의자의 저서를 왕성하게 번역하면서 활약함

* tian의 개념도 변화함 -> 正義的天 legitimized the cosmic Chinese imperial order에서 => tian become the principle of evolution으로 변화함(tianyan de tian 天演的天, which rewarded the strongest or fittest)

-> 최강적자를 보상하는 tian의 등장

-> 천자의 지배를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국이 데뷔하기 위한 주권적 혁명을 정당화해주는 논리가 됨

* 중국 지식인은 자연법에 따르는 국제법(마틴을 통해 휘튼을 받아들일 당시의 논리)의 일견 윤리적 질서보다 권력정치(弱肉強食)와 세력균형을 현실로 받아들임

-> 灭种的 공포가 지배했던 당시 중국 지식인은 진화, 경쟁, 적자생존을 국제사회의 기본

논리로 받아들임

* 중국의 초기 국제법 학자인 Tang Caichang(唐才常)는, 국제법은 강대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나 중국은 중국 인종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해 국제법 질서 내에서 주권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

〈International Law and Faith in Progress〉

* 이제 중국은 국제법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오족화합의 민족국가를 향해 나아감

* 강유위(康有为) 등이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노력함 -> 중국의 집합적 민족 정체성을 추구함

* 강유위는 대동서에서 무질서에서 화평시대를 거쳐 대동으로 진화하는 3단계 대동 진화론을 펼침; 그리고 대동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국에서 주권국가의 국제법적 세계를 거쳐야 함 -> 그의 사상은 제자인 양계초와 맥맹화(麦孟华)로 이어짐

* 맥맹화: 代权之世: 개인의 권리가 명목적인 단계 -> 争权之世: 개인과 국가가 진정한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단계(당대 중국은 이 단계) -> 平权之世: 문명화와 국가평등을 통해 대소각국이 평화로운 단계

* 양계초: 중국의 낙후에는 중국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봄

- 내부의 주권(정부가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이 외부의 주권으로 이어진다고 봄

- 국민이 민족의식을 지녀야 대외적 주권이 가능하다고 봄

-> 신민론 등; 강유위와 달리 대동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을 통해서 민족은 진보한다고 봄 -> 중국의 다양한 민족은 화합하되 한족의 지도하에 묶여야 한다고 봄

* 손문: 중국을 약하게 만든 것은 청왕조라고 판단함

- 中华民族을 주창하여 种族同化를 통해 하나의 다민족 국가를 만들어 영토와 인종을 통합하고자 노력함

- 불평등 조약 반대 -> 次殖民地로 전락한 중국을 강화하여 문명사회의 일원이 되자

〈Conclusion〉

* 신해혁명 이전 중국 지식인들은 주권을 천자에서 인민에게로 옮김; 중국을 다른 국가와 동등한 문명세계의 민족국가로 만들고자 노력함

* 이를 위해 국제법상 주권개념을 수용하면서 불평등조약에 의해 외국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문명사회의 동등한 일원이 되고자 함

* 주권이라는 개념 하에 청왕조 하의 다양한 인종을 하나의 다민족 국가 속에 묶으려 함

* Social Darwinism came to define China's struggle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still does define its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order.

Chapter 4
China Rejoining the World and Its Fictional Sovereignty,
1912-1949

김 현 철

1. China's Right to Exist and the Abolition of the Unequal Treaties

- o Wellington Koo: 1911년 우창봉기이후 중국 왕조의 전복. 제국 권위의 근원은 떠오르는 중국 민족의 새로운 인민에 의해 대체됨.
 - 외국과의 관계가 조공체제 또는 의례적 정의가 아닌 국제법의 지배와 외교부에 의해 운영됨.
 - 공화주의적 외교관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좀더 적극적 역할을 했는가를 설명함.
- o 베이징정부(베이양 정부<1912-1928>과 민족주의적 정부<1928-1948>) 시기 중국 외교관들은 방대한 청 제국 영토에 대해 법률적 주장을 통해 주권을 조율함(orchestrate).
 -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의 민족자결, 평등, 생존권을 가지고 지배적 원칙들에 도전함. 반면 서구 열강은 중국에 반주권(semi-sovereignty)의 예외적 상태를 부여하고, 불평등 조약을 통해 법률적으로 처리함.
- o 손중산(손문)은 1912년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pacta sunt servanda*(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중국 주권의 우위와 생존권(right to exist) 주장하기 시작함 : '조약수정 외교'로 불려짐.
 - 베이징 정부에 불평등 조약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1923년, 27년 중국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 모두 중국내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일깨우기 위해 수사적 도구로 활용됨.
- o 1919년 파리강화회의이후 민족 자결(self-determination)의 이상은 중국내 민족주의자와 공산당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침.
 - 국제적으로 민족적 주권을 단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법적 지렛대가 됨.
 - 1921년 손문은 민족자결의 3단계를 발표함: 五族共和, 民族融合, 民族同化를 거쳐 중국의 민족 독립과 모든 불평등조약의 폐지를 주장하는 반제국주의적 정책으로 나아감.
 - 그러나 청의 식민지화된 국경 영토의 소수 민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민족 자결이 중국내 강력한 인종적 요소를 가지게 되었으나 중국의 식민지와 소수민족들을 위한 것은 아님.

- 중국 외교관이 서구의 외교관습에 반대하기 위해 끌어낸 주요 개념은 生存權(the right to exist)임 : Qian Tai(錢泰) 베이징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1921년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국가는 根本 權利와 相對 權利를 가지며, 최초의 근본 권리는 한 국가의 생존권임.
 - 주권은 維持權으로부터 파생됨(그림 4-1 참조)

- Qiu Zuming(1927): 불평등 조약 폐기와 중국의 자연권 회복을 지지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근본 권리를 주장함.
 - 주권은 먼저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생존권으로부터 保存權과 自由權이 파생됨.(그림 4-2 참조)
 - 주권의 내외 구분: 내적 주권은 자주권(autonomy)로 이해되며, 외적 주권은 자유권으로부터 유래되는 독립권으로 독립권(independence)로 이해됨.
 - 불평등한 권리의 폐기라는 맥락에서 논의됨.

- Alfred Sao-ke Sze: 중국의 주권을 생존권과 연계시킴. 개인과 국가의 비유를 통해 주권의 기원(origin)을 논의함.
 - 치외법권과 관세자주권의 부족으로 중국의 주권이 가장 심각하게 제약받음.

- Koo: 자연법의 전통에서 국가와 개인간 유사성을 도출함.
 - 상호 관용과 호혜적 양보가 최상의 정책임.
 - 조약이 체결된 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 조약은 효력을 상실함.
 - 불평등조약을 폐기하고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의 평등한 주권 상태를 주장함.
 - 조약에서 호혜성(reciprocity)이 결여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정당화됨. 예외적 상황에서 조약이 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으로 무효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 영사관할권 각서의 폐기 이유로서, 조약내 호혜성의 결여(중국내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만, 외국에 있는 중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되는 상황에서는 한쪽의 일방적 폐기가 정당화될 수 있음.

- Liu Shih shun: 보수적 중국 외교관으로서, 불평등 조약은 외교 협상과 상호 동의를 통해서만 개정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무효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호혜성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었다고 정당화하는 일방적 행동은 국제법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봄.
 - 이러한 입장은 중국내 외교 지도부에게 반영되지 못함. 공식적 입장은 Koo의 다소 보수적이고 좀더 결연한 태도였음.
 - 파리회의에서 Koo 등 중국 외교관들은 “먼저 싸우고 나중에 항복하는” 전략을 취함. 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을 도입하여 중국의 주권을 증진시키며, 평

등과 호혜성의 원칙에 기반하지 않는 조약의 일방적 폐기를 주장하게 됨.

- 중국의 생존권 주장과 자결 정신의 고양은 중국내 월슨대통령의 이상과 부합됨.
 - 1919년 5.4운동 시기, 중국내 항의 여론을 동원하여 중국 외교관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도록 함.
 - 1921-22년 워싱턴 해군(군축)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Koo, Chung-hui Wang, Sze)는 산둥지역에서 영토 주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좌절을 언급함.
 - 중국의 영토 주권을 촉진하며 워싱턴 회의 참석국간 평등한 상태를 보장하는 결의안이 채택됨. 1922년 2월 워싱턴회의에서 산둥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일 대표간 협정 체결함. 다른 8개국 열강도 중국의 주권과 행정적 자주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함.

- 워싱턴 회담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정부는 제국주의적 공모라고 비난하고, 중국의 전체 주권의 무조건적 회복을 요구함.
 - 1920년대 중반에는 조약의 무조건적 종료를 추구하는 것이 중국내 혁명적 특징이 되었으며,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한 조약의 조건적 종료에 반대함.
 - 기존의 不平等條約들은 양자간 평등의 정신과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폐기되어야 했음.
- 이후 1940년대초까지 중국 외교관들은 중국이 국제사회(family of nations)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려는 열망을 이루기 위해 주권 개념을 실용적으로 활용함.

2. Orchestrating Sovereignty in the Frontiers with a Focus on Tibet

- 청의 前 식민지중에서 티벳과 신장 지역은 청 중앙 정부의 직접 통제 밖에서 기능하는 다른 권력 구조를 가짐.
 - 1924년 손문은 중앙정부가 중국내 소수민족(minorities)을 개발할 책임있다고 선언함.
 - 손문은 이들 소수민족이 자결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외국의 제국주의적 위협이 종결되고 중국의 민족혁명이 최종적으로 재통일될때까지 그 권리를 연기할 것을 주장함.

- 몽골, 티벳을 포함한 중국내 각 지역에 대해 지도 작성을 통해 영토에 대한 주권을 공고히 함
 - 1938년 “National Shame” 이라는 지도에 前 조공국가인 타이완, 시암(태국), 미얀마, 한국, 류큐(오키나와)가 포함됨.
 - 1948년 南海諸島位置圖에 남중국해내 섬들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는 9단선이 표기됨.

- 국경 이슈(frontier issue)에 대한 국가 통제와 영토가 주권의 근본적 측면으로, 국가형성 과정으로 여겨짐.
 - 새로운 중국 주권 영토가 frontier, border의 의미를 지닌 변강(邊疆), 변계(邊界)가 아니라, boundarie의 의미를 지닌 國境, 國界로서 획정됨.
 - 주권이 미치는 경계(sovereignty border)에 티벳, 만주, 내몽고, 신장을 포함하여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리적 영토가 그어진 것은 공화주의 시대에 매우 능숙한 외교관들의 작업 결과임.
 - Republic of China라는 상상된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는 외국의 침입뿐만 아니라 청제국내 내재된 인종적 다양함에 의해서 방해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여겨지게 됨.

- 손문: 自決은 민족주의의 주요 원칙중 하나지만, 몽골, 후이, 티벳, 만주의 소수민족들은 하나의 단일한 통일되고 민족화된 중국 공화국을 위한 Han self-determination을 따라야 하며, 단지 제한된 자체 지배(self-rule)만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 중국은 동북 변경지역- 포모사, 페스카도르 제도, 홍콩, 티벳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봄.
 - 티벳은 독립적 지위를 공공히하면서 또다른 한국이 되지 않기 위해 연속성을 유지해야함.

- 청의 前영토의 독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自決이 받아들여진 유일한 경우는 외몽골임.
 - 외몽골: 1921년 러시아에 의해 점령됨. 러시아의 군사지원을 댓가로 받아들이면서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음.

- 중국공화국시대에 외교관들은 효과적 통치를 결여하였으며, 소수인종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변경 영토에 대해서도 주권을 주장함: 티벳의 사례
 - 1913-14년 심라 회의시 영국 정부는 티벳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suzerainty)을 인정한다면, 중국은 티벳 내정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내용을 중국에 통지함.
 - ↔ 중국은 티벳 내정에 개입하며 그 영토를 행정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함.
 - 1914년 영국은 새로운 협정안에서 티벳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주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전략에 기안한 입장을 제시함.

- 오펜하임: 종주권(suzerainty)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안은 주권을 divisible concept으로 이해하는 것임.
 - 이 시기 중국에게 주권은 다음 2개의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
 - ① 외국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불평등 조약에 대항하여 영토와 인민에 대한 전체 통치를 재언명하기 위해 '피해자 중국(victim China)'에 의해 쓰여짐.

- ② 상실한 조공국가들의 제국적 영역을 새로운 주권의 영역으로 다시 편입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 이때 티벳은 ‘중국의 희생물(victim of China)으로서, 중국의 지배에 의해 침해당함.
- 티벳 문제에 대해 영-중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
 - 1920년대에 티벳의 근대화가 영국의 후견에 크게 의존함. 공식적 영국 정책으로는 중국이 티벳에 대해 단지 종주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힘.
- 1928년 국공합작이후 티벳에 대한 주권 요구는 서구의 국제법 틀내에서 중국의 국제적 권위를 다시 세우며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려는 중국의 투쟁의 주요 부분이 됨.
 - 1931년 공포된 국민당 정부 約法에는 티벳과 외몽고가 중국의 행정구역인 주(province)으로 포함됨. 이후 중국은 티벳이 중국의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주장함.
- 반면, 티벳은 영국의 강력한 영향력아래 반독립국(semi-independent state)로 유지됨.
 - 중국에서 파견된 대표 Huang과 티벳간 협상에서 중국 대표는 티벳에서 내정의 행정적 자주는 보장하지만, 외교와 전국적 사안(티벳내 통신과 주요 관리 선발)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중국 중앙정부는 티벳에 상주하는 대표로서 고위 관리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함.
 - 황 대표단의 미션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음에도 티벳에 대한 중국의 직접 통치는 이루어지지 못함.
- 제2차 세계대전중 장개석은 티벳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다시 천명함.
 - 1942년 티벳이 중국의 종주권과 주권을 거절하는 상징으로 자체적인 외교부서를 선포했을 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반면 영국은 이를 환영함.
- 1943년 5월 20일 워싱턴에서 송, 처칠, 루즈벨트간 회담에서 티벳문제가 다시 제기됨.
 - 중-티벳간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1940년대에 점차 변함. 공산주의자가 중국을 장악하자 미국의 입장은 급변하여 티벳에 대한 중국의 주권적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대함.
 - 이에 중국 티벳몽골 담당 고위관리 Shen Zonglian: 1944년 티벳에 대해 종주권의 행사를 거절하고 영주권을 확실하게 한다는 정책을 공표함.
 - 장개석은 단지 티벳에 높은 수준의 자주(高度的自)를 주는데 동의하였으며, 완전자주 원칙을 지지함.
 - 1947년 국민당의 새헌법에서는 자치하는(self-governing) 티벳은 중국의 한 지방구역(province)으로 간주한다고 다시 언명함.

○ 1920년 5월 신장 지방 정부가 소비에트 정부와 체결한 모든 불평등 조약의 폐기를 선언함.

- 1941년 국민당 何應欽 장군: 收復新疆主權方略 공표. 신장에 대한 중국 주권의 점진적 재회복 계획을 주장함.

○ 중국 외교관이 주권의 새로운 법적 테크닉과 국제법 및 포럼을 결합하여 활용한 사례: 만주위기임

- 불승인 정책 채택, 만주국을 괴뢰국가(puppet state)로 비난함.

- 일본이 북부 중국을 침략한 행위: 중국 주권의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함.

- 민족주의적 외교관들은 비타협적인 저항의 태도와 만주국 불승인의 태도를 취함.

→ 국제연맹의 권고안: 만주국 정권이 중국의 주권과 행정적 통합과 일관되게 나가야함.

3. China in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 국제연맹내 볼드윈 주장: 주권 분할 가능하며, 그 일부를 국제연맹과 공유함.

- 중국내 반응: 국가들사이에 중국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열강들과 함께 국제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 대두.

- 王正廷, Koo 등 외교관: 국제연맹은 중국이 주권과 자유를 회복하게 도와줄 수 있는 커다란 기회로 파악함. 大同 사상과 'a league of nations'와 연계시킴.

○ 2차대전이후 국제연합 창설과정에서 중국은 안보와 평화를 유지시켜줄 능력이 있는 집단안보체제의 발전에 커다란 관심 보임.

- 1945년 중국 대표는 집단안보의 이해관계가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에 주권 일부를 위임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중국이 주권의 부분적 포기 의사를 보인 부분은 ICJ의 강제 관할권 확립임.

→ 중국은 평등과 호혜성의 원칙을 강조함.

4. 결론

○ 각 시기별로 중국내 주권 개념의 변화과정과 외교관, 법률가들이 국제법 개념과 주요 원칙을 활용한 사례들에 주목할 필요 있음.

Chapter 5

From Proletarian Revolution to Peaceful Coexistence: Sovereignty in the PRC (1949-1989)

(프로레타리아 혁명에서 평화공존으로: 중국의 주권, 1949-1989)

전 재 성

□ 통일, 국제법, 소비에트 이념의 변화

- 중국은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도 신해혁명 이후 외교정책 원칙을 계승. 즉 평등, 상호이익, 주권존중, 영토보존의 원칙
-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가 된 이후 국제관계 진입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UN이나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에 대한 주권 회복의 필요성도 증가.
- 마르크스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반하여 국가 주권을 넘어선 국제사회를 만든다는 이념에 기초. 휴머니즘, 평화주의, 정의, 자유에 기반한 사회주의가 중요하다는 인식.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반대의 흐름이 존재.
- 그러나 혁명 성공 이후 주권없는 세계라는 이념은 존재하기 어렵게 변화. 국제법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브루조아의 침략적 국제법이라는 인식.
- 이러한 인식은 중국 주권에 대한 마오의 강조와 상충. 1937년 항일구국10대강령은 일본과 불평등 조약 타파, 주권 회복에 강조점.
- 이후 국가건설 이후 중국의 강조점은 점차 국가주권으로 이행. 1951년부터 중국 자체적인 관세법과 정책 실행. 외국인 기업들의 재산, 경제행위를 금지. 한국 전쟁 중이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체제 정비.
- 또한 버마,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과도 국경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채로 봉합.
- 특히 몽골리아, 티벳, 신장, 등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 확립이 중요한 문제. 일본 침략 당시에는 이들 지역의 자결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함. 그러나 1949년 이후 자결보다는 자치, 지역자치로 점차 변화. 처음에는 이들 지역에 상징적 자결권을 주었지만 점차 1949년 이후 강제력으로 중국의 통치권을 확립. 특히 문화대혁명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숙청과 탄압이 극대화.

□ 평화공존의 5대 원칙

- 소련의 경우 강력한 주권을 제시. 그러나 사실상 다른 공산주의 소국에 대한 간섭을 인정하는 주권론.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약소국들의 주권 확립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약소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소련의 지원, 개입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
- 중국은 이에 대해 자본주의 제국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개입주의 역시 국가주권을 침해

하는 제국주의라고 비판. 1969년 Theories of Limited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Dictatorship Are Social-Imperialist Gangster Tehories라는 Peking Review의 논문 게재.

- 중국은 1954년 자체적으로 5대 원칙을 제시.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과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상호불가침,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 평등과 상호 이익, 평화공존 등의 항목임.
- 이 중에서 평화공존은 자유진영과의 공존에 대한 원칙으로, 평화공존을 위해 자본주의 세계와 일정한 타협이 필요했다는 인식. 그러나 공존이 아닌 협력, 자주가 아닌 상호의존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반대. 또한 문명기준론에 의거 국제사회에 서구적, 제국적 문명기준론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된 반대.
- 이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주권 승인의 문제가 대두. 주권국가로 정립되는데 국제법적 승인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중국은 승인론에 반대하여 선언론을 강조. 주권국가로 스스로 선언하면 국제법적 주체과 된다는 이론. 중국은 아이젠하워, 케네디 행정부의 중국 불승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
- 흥미로운 점은 중국은 인권을 강조하고,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 국제법에 의한 지구적 거버넌스 등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인권에 기초하되 국가의 주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만을 인정한다는 인식이 강했음.

□ 대만 문제의 본격화

- 중국은 하나의 중국, 대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주권을 일관되게 강조.
- 중국 국민이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합법적으로 이룬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대만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고 중국의 주권을 부인함으로써 승인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
- 중소분쟁의 본격화, 마오의 문화대혁명 실패 등으로 1950년대와 60년대 중국의 입장이 약화. 중국은 반동회의, 이후 1960년대 약화된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 UN을 적극적으로 활용, 공략. UN의 기본 원칙이 중국의 5대 원칙과 사실상 같다는 논리를 제시. 중국의 UN 회원자격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

□ 일국양제 개념의 제시

- 1960년대 후반 마오는 이미 문화대혁명의 실패를 자인,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 이 과정에서 유엔에서 1971년 대만을 대신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마오 사망 이후 국제제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 시작.
- 1979년 이후 덩소평은 1982년 헌법에서 최초로 global interdependence를 언급. 점차 사회주의 계급투쟁에 대한 논리가 감소. 그러나 중국의 주권에 대해서는 강한 논리를 고수. 특히, 티벳, 내몽고, 신장은 중요한 지역. 강제력으로 지속적인 복속을 유지.
-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대만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면서 연방정부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정부에 복속된 지방정부라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

-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일국양제. 대만은 중국의 지방정부이지만 통일 이후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 1981년에 개발된 대만 정책의 논리이지만 적용은 홍콩에 먼저되기 시작.
-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주권적 지배에 대한 개념은 유지. 주권의 작동(exercise)는 중단되었지만 절대적 권원은 보존되고 있다는 논리. 이에 대해 할양, 대여를 통한 영토 주권의 중단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 시사점

- 중국의 주권, 국제법에 대한 관점은 실용주의적, 원래 일관되게 중국적인 것은 없다는 저자의 주장.
- 중국의 주권은 과거 중국의 제국적 관점, 티벳, 신장, 몽골 등에 대한 제국의 정책과 중복. 이 과정에서 주권 논리의 자체적 모순이 발견됨.
- 인권과 주권의 대립에서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는 인권에 대한 시각을 비판. 계급적 관점이나 공산주의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자유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중국이 자유주의를 극복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
- 중국은 여전히 근대 이행기 불평등 조약의 극복, 영토완정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 대외적 자주와 평등 등의 이념에 강하게 속박되어 있는 상황. 자유주의 질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차세대 패권국으로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

Chapter 6
Historical Legacies, Globalization,
and Chinese Sovereignty since 1989

김 수 압

실패한 역사의 종언과 중국의 절대주권에 대한 신화

○ 중국이 정치·전략적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해 주권을 통해 국제질서를 어떻게 헤쳐 나가
는지에 대해 탐구

- 교조적 주권 관념: 평화공존 5대 원칙이 작용
- 그러나 2001년 WTO 가입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절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
운 점

○ 1989년

- 베를린 장벽의 붕괴,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체제 전환, 미국의 패권, 자유질서의 우세
- 세계화와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전환에 대한 낙관: 역사의 종언
-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시대의 종언
- 중국의 천안문 사건 vs 인권침해 비난을 위해 경제제재에 의존

○ 인권침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1990년대 발칸, 르완다 대량 학살, NATO의 코소보
무력 개입

- 코피아난 총장: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응하여 세계화 및 국제협력에 의해 주권의 재정의
강조
- 인권과 인도주의 개입의 규범적 담론: 2001년 R2P 원칙의 정립

○ 서방은 중국의 점진적이고 꾸준한 전환을 기대

- 자유주의 관점에서 관여 정책의 증진
- 경제 개혁개방으로 권위주의적 억압정치체계의 자유화 민주화에 대한 희망
- 천안문 사태로 회의론 대두

○ 역사의 종언과는 다른 상황의 전개: 중국은 자신의 발전 경로 추구

- 신성불가침의 주권 원칙 아래 최상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제도 선택
- 천안문 이후 인권침해 낙인국으로 비난의 대상
- 중국은 이에 대해 주권 평등, 국가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내정불간섭이 국제관계를 규율
하는 기본원칙이라는 입장
- 대외정책의 핵심 이념은 주권: 영토적 통합, 내정불간섭, 불가침

○ 인권은 주권에 의존한다는 입장

-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제재와 군사적 개입에 대해 경계하면서 안보리의 위임 없는 개입에 반대
-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제국주의 전략이라고 규정: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간 개입 직후
- 인도주의적 개입의 미명 아래 개입이 대규모 인도주의 재앙을 초래한다고 비판
- 인권이 주권보다 우위라는 주장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제국주의 전략

○ 2000년대 일부 다른 태도

- 1999년 미국의 코소보와 유고연방 개입에 반대하면서도 동티모르 개입은 지지
- 1981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지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주요 기여자
- 변화하는 중국의 이해에 따라 주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 표출

○ 중국은 인권을 이행하는데 내정불간섭, 주권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입장

- 인권은 개별국가의 역사·국가적 조건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이슈
- 인권에 대한 국가 중심적 접근: 국가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에 우위
- 주권의 원칙 아래 보다 나은 인권 보호 가능
- 개발도상국과 같이 자결권 강조
-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회의에서 지배적 주권중심의 인권개념 옹호

○ 그렇지만 중국은 인권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편주의적 접근

-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UPR에서 국가의 의무를 지지하는 발언
- 다만 ICCPR 비준 유보, 주권의 원칙에 대한 제도적 제약을 수용하는 데는 소극적
- ICJ, ICC의 강제관할권에 대한 수용 거부
- 경제발전의 차이가 특정권리의 선호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입장: 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사회권의 우선

영토통합과 새로운 해양경계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

○ 백년국치(1839~1949)의 수사

- 중국헌법: 조국의 통일
- 다양한 영토 해양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 세 가지 유형의 분쟁

- 대만, 홍콩, 마카오 분쟁
- 남중국해 분쟁
- 국경분쟁

○ 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 국제법에서 주권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소유권의 중요성
- 영토적 주권과 영토 통합을 강조
-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의 주체
- 영토는 국가의 근본적 기준으로 국가의 핵심 기능: 영토 안전의 보장, 그렇지 않으면 청 제국처럼 식민지로 전락
- 2007년 이후 영토와 관할권에 준거를 둔 보다 급진적 주권에 대한 호소
- 2010년 후진타오 주석: 중국 인민에게 어떤 무엇에 비추어도 국가주권과 영토통합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
- 2010년 원자바오 유엔 총회 연설: 주권, 통일, 영토통합은 중국이 양보, 타협할 수 없는 사안
- 2013년: 국가안보, 경제발전은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타협 불가능

○ 남중국해 문제

- 고대 이래 중국의 영토로서 침해 받을 수 없는 영토주권, 해양권리

○ 경제자유화 이후 중앙정부는 내몽골 자치구 회복과 티벳 등 변경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자율 부여

- 2004년 지역국가자치법: 자치구의 의무와 권리 적시
- 그러나 이 지역에서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 몽골, 티벳, 위그류 지역의 대부분을 중앙통치에 두는데 있어서의 취약성이 여전

○ 1997년 홍콩, 마카오의 반환

- 일국양제, umbrella 운동, 독립운동의 전개
- 가장 큰 우려는 대만 문제
- 중국 헌법: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로 규정
- 2005년 반분리법 제정, 하나의 중국
- 중국주권과 영토통합은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의 의무
- 대만에 대한 중국의 완고한 주권 인식
- 대만에 대한 불승인 대외정책을 견지
- 미국의 대만관계법 공식 비판

○ 기술진보에 의한 공간의 영토화와 주권화 가능성

- 해양공간의 사례
- 우주공간의 사례
- 해양에 대한 권역(zone)별 접근

- 해양 영역과 자원에 대한 통제가 보다 구체화
- 12마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 1947년 지도에 근거하여 남중국에 대한 권리 주장
- 해양 권리의 범위가 아닌 섬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
- 역사적 수역, 역사적 관할권의 근거한 주장
- 새로운 주권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권리의 주장
-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 주장
- 섬을 둘러싼 해양 수역을 포함하는 영해의 확장을 주장
-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역사 활용의 전략

세계화와 주권의 재정의

○주권에 대한 완고한 이해

- 그렇지만 중국은 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 2017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의 시진핑 연설: global, globalization 70번 언급
- 반면 트럼프는 주권과 국익 옹호, 21번 언급, 세계화는 언급하지 않은 점
- 그렇지만 시진핑의 세계화와 주권의 관계에 대한 인식: 경제적 세계화와 WTO 가입에 호의적, 정치적·문화적 세계화는 반대

○많은 중국학자들은 세계화 과정이 보다 투쟁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사회의 근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

- 세계화와 주권은 동전의 양면
- 대부분의 인간활동이 주권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초국적 영역과 행위자가 있더라도 세계화가 모든 사회적 삶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입장
- 주권이 변형되어도 관련성과 중요성은 감소될 수 없다는 입장
- 다만, 주권이 정적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 국가이익에 따라 발전
- 세계화가 주권국가 국제체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주권의 타협은 가능

○주권은 국제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중국의 실제 태도

- 주권은 통제불가 혹은 무책임한 힘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
- 다만 주권의 행사가 국가독립과 국제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성취하는 국제법을 통해서 제한 가능
- 주권국가는 공통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 다만, 상호의존적이고 다른 국가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입장
- 그렇지만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대한 거부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중국의 태도에 의문을 갖게 하는 행동
- 국제제도의 조사에 대한 일상적 거부는 WTO가입과 대비되는 행동

- 중국은 세계화의 일환으로 시진핑의 일대일로 의 구상
 - 유라시아, 북아프리카를 포괄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가파른 증가
 - 인프라 네트워크의 구축
 - 일대일로는 정연한 법적 구조의 결여
 - 현 질서 내에서의 작동: 프로젝트도 서방 금융제도에 의해 부분적인 재정 충당
 - 2017년 일대일로 포럼에서의 시진핑 연설: 타국의 내정에 간섭할 의도가 없다는 점, 자신의 사회체제와 발전모델을 수출할 의향이 없다는 점
 - 이러한 표명과는 다른 방향의 전개: 스리랑카의 사례,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부티, 나미비아, 스리랑카에 주둔

국제법의 규칙과 국제질서

- 국제법은 제국주의 수단이라는 입장
 - 점차 보편적 타당성 인정
 - 단순히 서방의 관행과 이론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이해
- 중국은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도록 규범을 다시 설정하는데 익숙
 - 규범의 해석, 적용, 이행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규범에 대한 지지 표명
 - 중국의 이러한 방식의 규범에 대한 해석은 규범에 내재된 의미를 침식할 가능성
 - 규범의 수용보다는 상이한 해석과 이행을 통해 규범에 도전
 - 급진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현존하는 규범의 수정을 선호
- 국제법은 본질적으로 세계질서의 비전에 관련된 것으로 인식
 - 세계질서라는 규범적 용어 대신 국제형세로 표현, 평화공존, 화평굴기, 조화세계, 국제법치
 - 국제법은 규칙의 본체가 아니라 국제법의 규범적 내용에 대한 정책결정의 과정으로 인식
- 조화세계 정책은 2005년 후진타오에 의해 시작
 - 조화세계의 관념은 국내적 수사에 뿌리: 和而不同
 - 평화공존 → 조화로운 공존으로 진화(조화세계)

- 강조점은 주권이면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화
 - 글로벌 다자협력, global co-governance
 - 주권적 영토경계를 부식하려는 주권적 요구와 세계시장 상의 불균형에 대해 중용의 증진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노력
 - 조화는 통일성이 아닌 양측 견해의 합리성 고려, 개별국가의 다양성 유지

- 다양성의 공존을 위한 '보편적 사랑', 호혜 강조
- global nation-state: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나 지방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

Conclusion

차 태 서

- 중국 근현대사 = 주권추구의 역사
- 주권 개념의 쓰임새들
 - 반서구 제국주의, 국제사회 민주화, 정당한 국제 행위자로서 승인획득
- 서구제국 타자로부터 어렵게 얻은 전리품이자 중국 제국 자아의 전리품
 - 청 식민지의 강압적 재통일 도구 & 새로운 영토권리 주창
- 지난 150여 년간 주권은 국익추구의 수단역할
 - 중국의 주권개념 접근법의 특징은 “실용주의”

- 미래 중국외교정책의 핵심문제: “근대민족국가처럼 행동하는 영원한 제국이라는 사실”(Westad)
 - 오늘날 중국의 진로변경, 위대부흥 수사: 백년국치 후 세계강대국으로서 자연스러운 지위 회복?
- 위대부흥론과 함께 “천하” IRT부상
 - 중국학파의 토착적 세계질서 비전
 - 전통지혜에 기반해 중국의 국제관계 접근법 재정의?
- 천하 레토릭은 도덕적 중국 vs 비도덕적 서구라는 절대적 구분에 기초
 - 중국의 신해계모니 프로젝트 정당화
- 역사의 왜곡/남용문제: “역사는 현재, 미래의 관심과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Gadamer)
 - 역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집단기억과 국가정체성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가 핵심
 - 엘리트는 늘 통치 정당화를 위해 역사기억을 이용: 중공도 마찬가지
- 현 중국의 역사사용/위대부흥 수사에 담긴 일련의 가정들
 - 강력한 중앙국가가 특징인 단 하나의 과거만 존재 -> 하나의 미래만 존재
 - 중국사의 본질화: 다양한 과거/전통을 삭제, 중국의 미래 정치적 선택도 박탈
- 오늘날 주권논쟁: 궁극적으로 민족국가/국제법의 미래논의와 연결
- 현 웨스트팔리안 체제의 결함이 신중국 세계질서의 우위보장X
- 주권개념을 계속 증시할 필요성
 - 지구권력/글로벌 거버넌스/제국 프로젝트에 맞설 자율성의 개념도구로서 주권